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주요 법안 동향

| 법안 종류 | 키워드 | 주요 법안 | 주요 내용 |
|---------|-----------------|-----------------------------------|---|
| 발의안 | 에너지/인프라, 인프라&테크 | 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긴급수정조치 위반과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공급망 안정화 기금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면책 규정을 추가하도록 함. |
| | 에너지/인프라 | ②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의 유연한 참여와 공정한 경쟁유도를 위해 사업 인·허가체계 정비 △정부의 수소비축 시책과 5개년 공급계획을 통한 안정적인 수소공급 기반 구축 △거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한 수소거래소 지정 △시장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보험가입 의무화 및 사고예방 조치 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조항 등. |
| 국회 계류안 | 기업송무 | ③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
| 공포 법령 | 건설/부동산 | ④ 주택법 시행령 | 도시형 생활주택을 85㎡ 이하 중소형 5층 이상 아파트형 주택으로 건설할수 있도록 함. |
| 입법/행정예고 | 인사/노무 | 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에 노출된 채 작업할 시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하고, 이를 어긴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1. 발의안

*각 법률안 및 검토보고서 확인을 위해서는, 법률안 밑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제안자 | 법안명 | 내용 | 관련기사 | 진행 경과 |
|----|--|--|---|--|------------------|
| 1 |  <p>김상훈 (국민의힘)</p>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흐름에 직면하고 있으며 경제안보 중심의 공급망 재편은 지속·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또한,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공급망 안정이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한 핵심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경제·민생 안정화를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매점매석 행위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공급망안정화기금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는 등 관련 제도 미비로 공급망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공급망의 안정적 운용기반을 구축하고, 공급망 위기 발생에 대비한 신속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급망안정화기금 업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면책 규정을 도입함(안 제45조의2 신설). 나.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하여 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 및 제50조 신설). 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조성기간을 5년으로 하되, 공급망 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9828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부칙 제2조). | <p>매일경제 25. 1. 21. 與김상훈, 트럼프 2기 대응 공급망안정 강화 법안 발의</p> <p>https://www.mk.co.kr/news/politics/11223031</p> | 25. 1. 20. 제안 |

출처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A5B011J0H9G1G0F4F3B0C8A8A2Z9

| 번호 | 제안자 | 법안명 | 내용 | 관련기사 | 진행 경과 |
|----|--|-----------------|---|------|---------------|
| 2 |  <p>이종배 (국민의힘)</p>  <p>정태호 (더불어민주당)</p> |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로 인해 탄소중립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러-우 전쟁 등에 따른 에너지 공급 위기로 인해 에너지 안보가 강조되면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수소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2020년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구축, 청정수소 인증, 수소발전 입찰 시장 도입, 수소 전문기업 육성 및 인력양성 등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하지만 수소 사업 진·출입 및 시장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는 수소법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수소 에너지원의 본격적인 활용에 앞서 건전한 수소 시장 형성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소 사업 인허가, 수급 관리, 사업자 의무 및 사용자 보호 등, 기존 ‘진흥’ 목적의 수소법과는 달리 체계적인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사업자의 유연한 수소 사업 참여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수소 공급계획, 수급 예측, 비축 등 안정적인 수급 관리 기반을 마련하며,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을 제정하여, 사업자의 수소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수소 사업 생태계 조성 및 수소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이 법의 목적을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수소·수소화합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수소, 수소화합물, 수소·수소화합물사업, 수소·수소화합물사업자를 정의함(안 제2조). 다. 배관업, 인수기지업, 수출입업, 제조업, 판매·운송업, 반출입업의 인허가 기준 및 절차, 결격사유, 지위 승계, 사업 개시, 허가·등록의 취소 및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 | 25. 1. 17. 제안 |

| 번호 | 제안자 | 법안명 | 내용 | 관련기사 | 진행 경과 |
|----|-----|-----|---|------|-------|
| | | | <p>라. 배관업자·인수기지업자에게 타 사업자에 대한 배관시설·인수기지 공동이용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배관시설·인수기지 이용료 등 이용규정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p> <p>마. 배관업자·인수기지업자가 배관시설·인수기지구축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며, 발전용 연료 공급 시설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전원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특례를 둠(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p> <p>바. 일정한 수소사업자에게 매년 5개년의 수소·수소화합물 공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수소·수소화합물 수급을 예측하도록 하며, 정부는 수소·수소화합물 비축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수소화합물 비축의무자에게 비축의무를 부여함(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p> <p>사. 수소·수소화합물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수소거래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p> <p>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에 대한 조정명령, 지자체장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사업자의 정부와 지자체장에 대한 보고와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사고의 통보 등을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p> <p>자. 수소사업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판매가격 보고 의무 및 부정 판매, 사재기 등 금지행위를 규정하며, 인허가 취소·영업장 폐쇄 등과 관련하여 청문 절차와 인허가 취득 시 수수료 납부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p> | | |

| 번호 | 제안자 | 법안명 | 내용 | 관련기사 | 진행 경과 |
|----|-----|-----|---|------|-------|
| | | | <p>차. 법률상 각종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함(안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p> <p>출처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O5M001J1K4I1G4H1F5G1O800M9L5</p> | | |

2. 국회 계류안

| 번호 | 제안자 | 법안명 | 내용 | 관련기사 | 진행 경과 |
|----|--|---------------|---|---|---|
| 3 |  <p>이정문 (더불어민주당)</p>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상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합병·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을 획책하고,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음. 위와 같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부재는 개인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등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외국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 전자주주총회 방식 도입과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64조 등). <p>출처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M4K111J1R9S1Q4Q1P9N3O8W7W9V0</p> | <p>머니투데이 25. 1. 22. 법사위,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 계속 논의... "다음 회의 때 표결"</p> <p>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12215171122642</p> | <p>24. 11. 19. 제안</p> <p>24. 11. 26. 소위 상정/ 축조심사</p> <p>25. 1. 22. 소위 상정/ 축조심사</p> <p>*「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 (2024. 11. 25.)</p> |

3. 공포 법령

| 번호 | 소관부처 | 법안명 | 내용 | 관련기사 | 일자 |
|----|-------|---------|--|--|---|
| 4 | 국토교통부 | 주택법 시행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중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 중 종전의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고, 해당 주택의 요건 중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로 제한하던 것을 삭제하려는 것임. <p>출처 :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_시행령</p> | <p>문화일보 25. 1. 20. 도시형생활주택을 아파트처럼 넓게... 85㎡까지 규제 완화</p> <p>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5012001039905238002</p> | <p>25. 1. 21. 일부개정</p> <p>25. 1. 21. 시행</p> |

4. 입법/행정 예고

| 번호 | 소관부처 | 법안명 | 내용 | 관련기사 | 예고기간 |
|----|-------|-------------------------|--|---|------------------------------|
| 5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염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가 사업주의 의무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0522호, 2024. 10. 22. 공포, 2025. 6. 1. 시행)됨에 따라, 폭염 및 폭염작업에 대한 정의규정과 폭염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주의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폭염 등 정의규정 신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폭염”을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으로 규정(안 제558조제4호) 2) “폭염작업”을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로 규정(안 제559조제4항, 별표 13의2) 나. 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 보건조치 사항 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로자가 실내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냉방·통풍을 위한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의 설치, 작업시간대의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60조제2항) 2) 근로자의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온도·습도를 알 수 있도록 근로자의 주된 작업장소에 온도계 등을 상시 비치하도록 함(안 제562조제2항) 3) 근로자에게 고열 또는 폭염작업에 따른 온열질환의 증상 및 예방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을 알려야 함(안 제562조제3항) 4)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하도록 함 (안 제562조제4항) | <p>세계일보 25. 1. 22. 체감 33도 이상 폭염 땀 2시간마다 20분 휴식</p> <p>https://www.segye.com/newsView/20250122520280</p> | 25. 1. 23. ~ 25. 3. 4. |

| 번호 | 소관부처 | 법안명 | 내용 | 관련기사 | 예고기간 |
|----|------|-----|--|------|------|
| | | | <p>5) 근로자에게 고열 또는 폭염작업 중인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하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562조제5항)</p> <p>6) 근로자가 옥외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간대의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66조제2항)</p> <p>7) 근로자가 체감온도 33℃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566조제3항)</p> <p>8)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를 '충분히' 갖추어 두도록 명확히 함(안 제571조)</p> | | |

출처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1372>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한겨레][기사] "중대재해법이 안전보건체계 강화" 사용자가 더 긍정 평가 (2025. 1. 22.)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79272.html>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노동자와 사용자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법이 일터의 안전보건 체계를 강화한다는 데 사용자 측이 노동자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함. 민주노총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전보다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충실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사용자 42%, 노동자 36%로 집계됨. 또한, 법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에 기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노사 모두 44%로 동일함. 사용자 측은 중처법 시행 이후 효과로 업무 증가(86.3%)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경영진의 안전 중시(69.8%), 노동자 측에 정보 공개(58.1%), 경영진의 현장 참여(53.2%)를 뒤이어 선택함. 노동자 측은 경영진의 안전 중시(56.9%)를 가장 중요한 변화로 평가함. 연구진은 경영진의 현장 참여 증가와 안전 중시가 법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라고 분석함.

[헤럴드경제][기사] "중대재해 수사·공판 장기화 불가피...산업고도화땀 단축될 것" (2025. 1. 22.)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04655>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차에 접어들면서, 법의 실효성에 대한 노동계와 산업계, 산업 현장의 평가는 여전히 엇갈리고 있음. 오인서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22일 헤럴드경제·대륙아주 공동 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에서 수사·공판 장기화는 당분간 불가피하지만, 산업고도화로 이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과중한 벌칙에 대한 논란도 검찰과 법원의 양형 사유 반영을 통해 정리될 것이라고 덧붙임. 또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기업인들의 경영 위축, 잠재적 범죄인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공존한다고 평가함. 그는 중장기적으로 형벌에 의한 예방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들의 경각심 제고와 안전보건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유죄 판결이 다수 나왔지만, 초기 판결은 법리 해석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 등 외부 컨설팅을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안전보건 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연합뉴스][기사] "중대시민재해 대응 구심점 없어...행안부가 컨트롤타워 돼야" (2025. 1. 22.)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2080400004?input=1195m>

주요내용

'중대시민재해'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국회에서 '중대시민재해 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 개정 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함. 경실련은 중대시민재해 예방력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 정책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함. 현재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 시민재해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으나, 구심점 부재로 조정이 원활하지 않아서 행안부가 조정자로서 정책을 일관되게 장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또한, 경실련은 중대시민재해 적용 범위 확대의 필요성과 더불어 처벌을 강조하는 현행 법 명칭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변경할 필요성도 제기하였음.

담당 변호사 및 전문인력

입법전략센터



전주혜
대표변호사

T : 02-3016-7415
E : jhjun@draju.com



차동언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0
E : decha@draju.com



박민재
공동센터장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17
E : parkmj@draju.com



최원혁
변호사

T : 02-3016-8737
E : whchoi@draju.com



권기원
공동센터장

T : 02-3016-8743
E : gwkwon@draju.com



김계홍
고문

T : 02-3016-7493
E : kgh1509@draju.com

입법전략센터



이승철
고문

T : 02-3016-8706
E : sclee@draju.com



박미현
외국변호사

T : 02-3016-8731
E : mmpark@draju.com



이상봉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76
E : sblee@draju.com



김수형
파트너변호사

T : 02-3456-7677
E : shkim@draju.com



전재기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78
E : jkjun@draju.com



김보훈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06
E : bhkim@draju.com

중대재해 자문그룹



김영규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3
E : ykim2@draju.com



박윤욱
고문

T : 02-3016-5339
E : skyuk23@draju.com